

1. 경보 설비는 지정 수량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하는가? (4)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경보설비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경보설비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1종 이상)이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지정수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연한 부분(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연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5. 옥내저장소에서 반드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경보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지정 수량 몇 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인가? (단, 지정수량 배수와 관련한 조건만 고려하며,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경보설비로 설치해야 한다.